

02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 I.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배경
- II.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관련 주요 내용
- III.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IV. 기대효과

I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배경



●● 자원순환사회의 필요성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당면한 환경·자원·에너지 위기의 극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분	그간의 정책	새로운 정책방향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기후변화, 원자재·에너지 고갈
목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전략	감량 → 재활용 → 처리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 → 처리선진화
주요과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및 처리 시설설치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자원 등 에너지화, 처리광역화
핵심개념	폐기물	자원(순환/천연)

● ●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2013년 만 하더라도 원자재의 전체 수입량은 하루 평균 약 1조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1일 평균 수출액 모두를 합친 5,500억 원의 약 두배에 이르는 큰 액수이다.

[일단위 수출 · 입 통계 비교]

구분	1일 원자재 수입액	1일 주요품목 수출액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13년도	9,564억원	5,554억원

또한,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국가중 4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좁은 국토에 매립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 상황이다.



● ● 해외 사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환경위기, 에너지위기, 자원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매립제로화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1995년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원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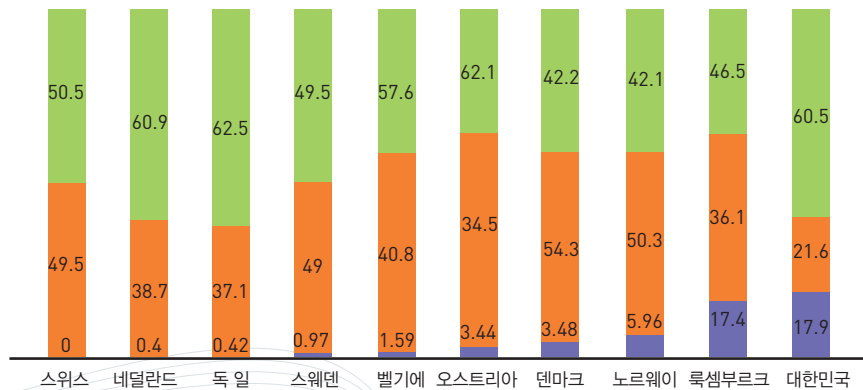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고,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여 2010년 생활폐기물 매립률 0.4%를 달성한 바 있다. 독일은 더 나아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2년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한 결과 2010년 매립률을 3%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또한 다수의 EU 국가는 매립세 또는 직매립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국가별 매립률 현황]

주요국가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 '10)

■ 매립 ■ 소각 ■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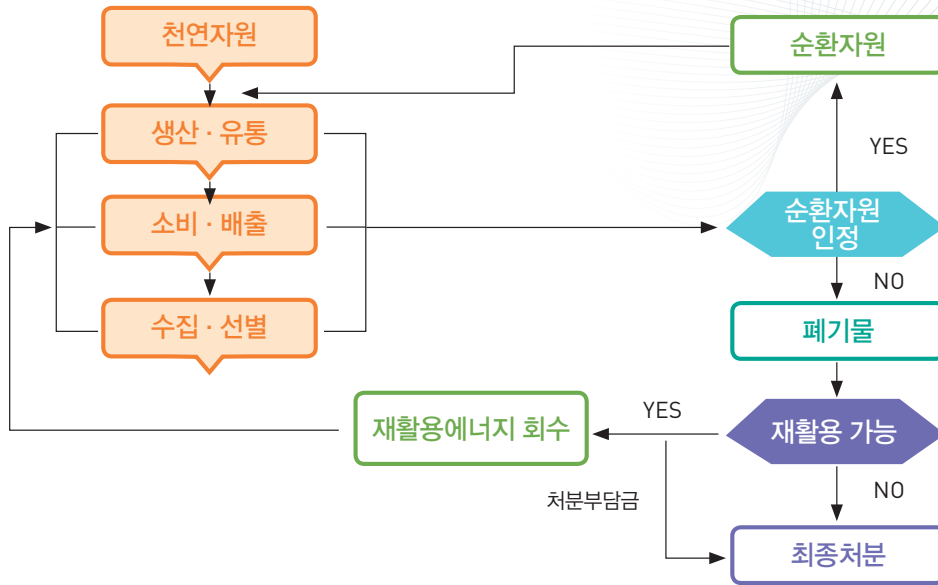
II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 ●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채택되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사회란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직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 중 순환자원을 인정하여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순환자원 인정),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한편(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이 단순 매립·소각되는 대신 재활용되는 구조를 형성(폐기물처분부담금)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자원순환 체계]



● ● 순환자원 인정제도

폐기물이 일정 요건(경제성, 환경성)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관리 및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고철·폐지 등과 같이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현행 법체계로서는 재활용 후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되어 운반·사용과정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물질은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기준에는 환경과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 공익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사후관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일본 ·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구분	일본	EU
근거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지침	폐기물기본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s)
종료요건	<p>[폐기물 해당성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건의 성상) 생활환경보전상에 지장이 없을 것 ② (배출상황) 수요가 있고 배출전이나 배출시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것 ③ (취급형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폐기물로 처리 되는 사례가 없을 것 ④ (취급가치의 유무) 거래자간 유상 양도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 ⑤ (점유자의 의사) 점유자가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의사가 인정되고 방치 ·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것 	<p>[Article 5 : By-produc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용도가 확실할 것 ② 추가 공정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일련의 생산공정 내에서 발생할 것 ④ 제품이나 환경 · 건강보호 요건에 충족하고,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하지 않을 것 <hr/> <p>[Article 6 : End-of-waste stat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 목적(specific purpose)으로 사용될 것 ② 시장 · 수요가 있을 것 ③ 특정목적에 맞는 기술요건과 제품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사용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위해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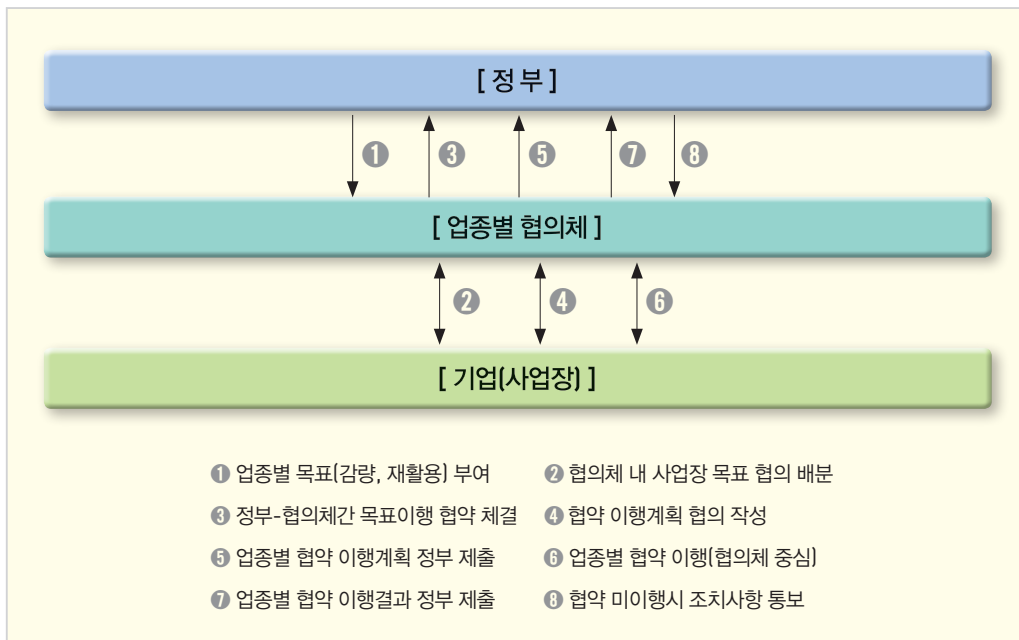
● ●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발전, 철강 등 18개 업종 총 1,500여개 업소)에 자원 · 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평가 · 환류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률 등이 구체적인 관리지표로 설정되며 구체적인 목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정된다.

특히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실행력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기술진단 및 개선 요구를 거쳐 실효성 확보수단(명단공개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의 저감, 순환자원의 천연자원 대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안)]



● ● 폐기물처분부담금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단순하게 소각·매립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된다. 이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한 자원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히 매립량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에너지 회수, 자가매립지 조성 등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요율 수준 및 부과대상은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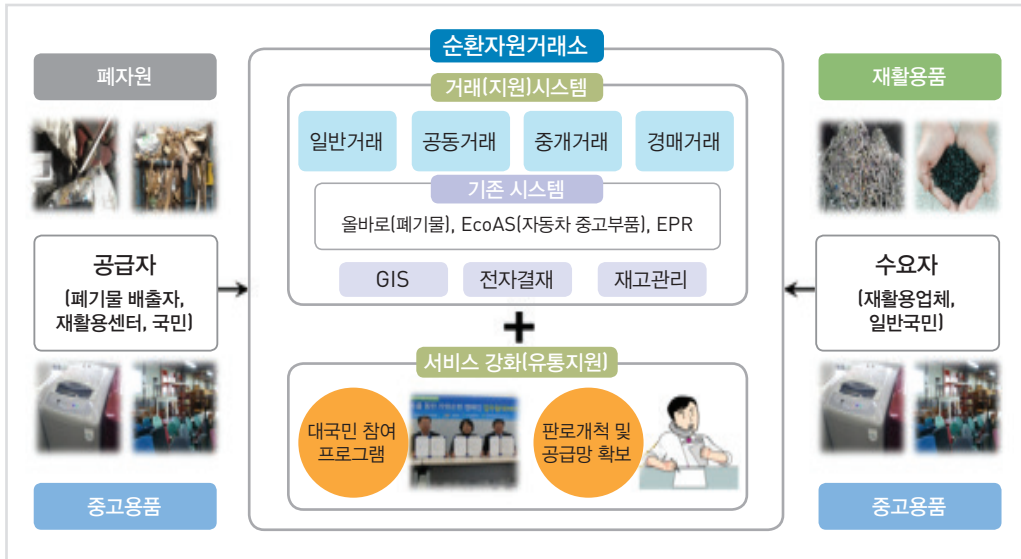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매립·소각세 도입현황]

국가	도입시기	매립세 요율 (€/t)
벨기에 (플랑드르)	1990(매립)	37.7-84.89
벨기에 (왈로니아)	1991(매립,소각)	25-65
덴마크	1987(매립,소각)	63
프랑스	1993(매립) 2008(소각)	비허가매립지 100 허가매립지 30 등
네덜란드	1995 (*12년폐지)	17
노르웨이	1999(매립, 소각) (소각세 *10년폐지)	37.4
스웨덴	2000(매립)	43
스위스	2001(매립)	불활성폐기물 2.3 안정화폐기물 13 잔재물매립 12

● ● 자원순환 업계 지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순환자원에 대해 품질표지를 부여하고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순환자원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순환자원거래소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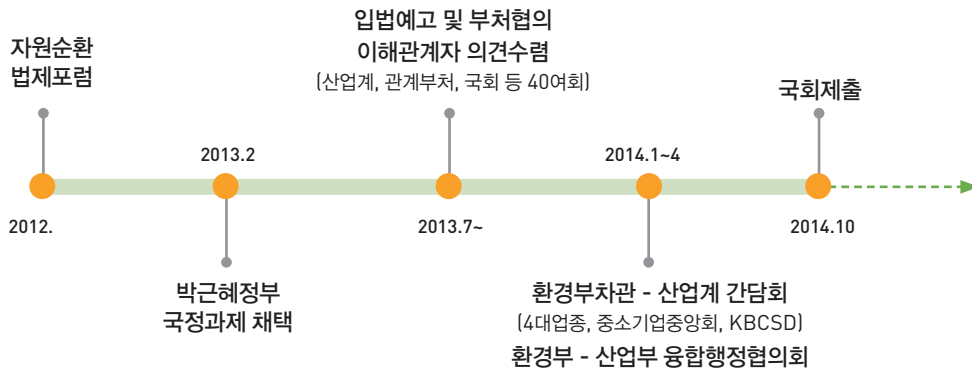
III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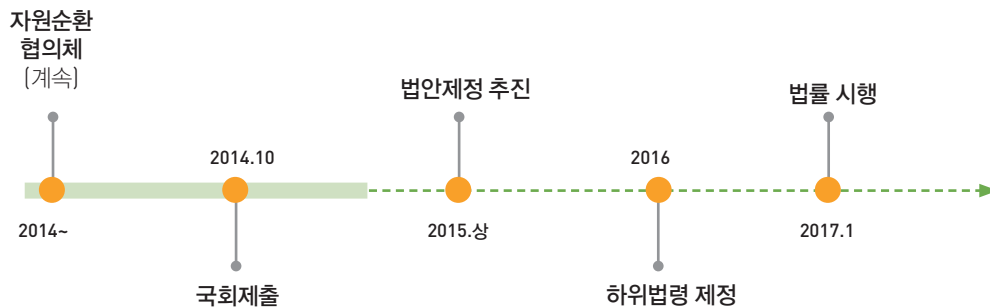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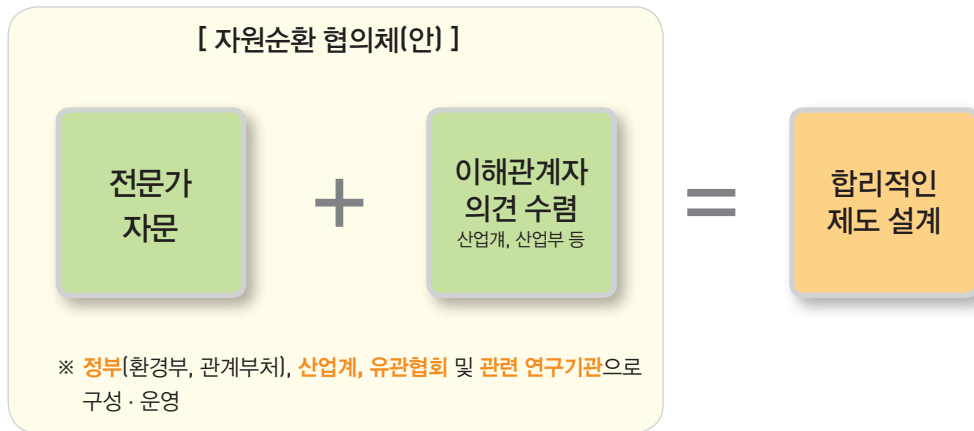
● ● 추진경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 마련을 위한 법제포럼 운영('12.1~'13.3), 법안 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40여회)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하여 지난 2014년 10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 향후 계획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과 의원발의 법안 4건⁰¹의 충분한 논의 및 병합심사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중에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법안 제정과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자원순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01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13.7, 최봉홍의원),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14.2, 이완영의원),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13.11, 전병헌의원), 자원순환촉진기본법('13.12, 이윤석의원)

IV 기대효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순환자원의 사용이 확대되며 천연자원 사용을 대체하여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활용량이 연간 약 1천만톤 증가하여 1.7조원의 재활용 시장이 창출되고, 약 11,000여개의 일자리 또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재활용 가능자원의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매립지 수명이 20년 이상 연장되고, 매립·소각 물질이 최소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책

Briefs

